

2026년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 시행지침

I.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촌지역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로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인 ‘신경북형 사과원’의 지속 성장 한계 도달
- 고품질 다수확, 기계화가 용이한 ‘경북형 평면 사과원’으로 사과생산구조 대전환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3. 추진방향

- 기존 사과원 수형 대비 기계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다축형 사과원으로 생산 구조 전환
- 경북형 평면 사과원의 규모화·기계화를 통한 도내 사과농가 경쟁력 제고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2. 사업량 : 10ha

3. 총사업비 : 1,152,000천원(도비 172,800, 군비 403,200, 자부담 576,00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36백만원/0.3ha (초밀식형, 다축형)**

4. 사업내용 :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경북형 평면 사과원 수형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 지주·배수·관수·관비 시설, 토량 개량 등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세부지원내용

분 류	세부내용
묘목구입	초밀식형*, 다축형(2축형 포함)묘목 구입 비용 * 초밀식형 사과원 : 3m(열간)×1m(주간) 사과원 조성 - 주간 거리는 반드시 1m이내 **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자체 보증된 우량 묘목 구입
지주·배수·관수·관비시설	FTA 기금사업 세부사업 단가 적용
토양개량	퇴비(완숙), 용성인비, 석회, 복합비료 구입비 등
기타사항	ICT 기반 스마트시설 등 기타 생산 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단가는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군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과수발전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희망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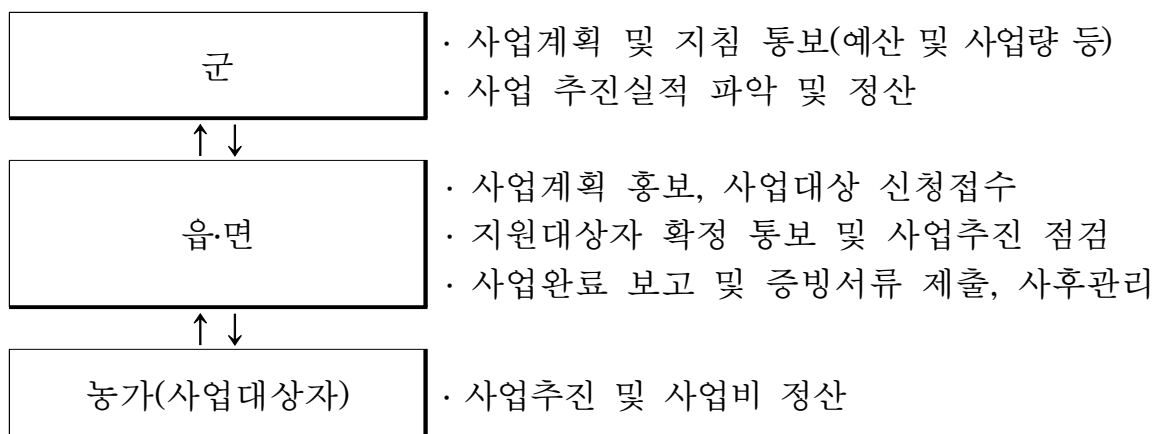
6.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요건 등

- 선정기준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본인 소유의 농지에 한하여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단)농지를 임차한 농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10년 이상), 토지사용
이용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선정절차
 - (읍면동) 사업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군으로 보고 【서식 1】
 - (시 군)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으로 사업량 배정
 - (읍면동) 심사표를 이용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서식 6】
 -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 유무 검토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사업 시행 체계



Ⅲ. 사업 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세부사업 계획 2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이나 집행 잔액 등을 당해 보조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제품(토양 개량 등) 공급 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사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IV. 이행점검 및 사후 관리

- 시군에서는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 도 및 시군에서는 상·하반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서식 4】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 및 시군에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관리 카드에 기록·유지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품종갱신 묘목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자재, 품종갱신 부속종물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서식 1】

2026년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연 락 처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m ²)	교육이수내역 (최근 5년 이내)	과수재배 경력 (경영체 등록 기준)			
사업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경북형 평면사과원 재배면적 (m ²)	기 조성면적		사업 신청면적				
				기존 과원갱신		타 작물 전환		
	사업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묘목구입	다축형묘목구입	()주					
	배수시설	배수시설설치	1식					
	토랑개량	퇴비,석회 구입	1식					
	관수시설	관수시설 설치	1식					
	기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도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1.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수) 2. 교육 이수 관련 증빙 자료(해당 시) 3.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이용서 등(임차농, 해당시) <불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illegible]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